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
제316회 제2차 정례회

-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제 안 설 명 서



2025. 11.

고 명 욱 의원

제 안 설 명 서

제안자 : 고명욱 의원

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먼저,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공유재산의 운영에 있어 중대한 공유재산 처분 시, 서면 심의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심의 절차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, 이를 통해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관리 및 공공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.

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안 제4조에서 서면심의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.

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

-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2025년 11월 14일부터 11월 26일까지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.

□ **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,**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의 운영에 있어 중대한 공유 재산 처분 시, 서면심의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심의 절차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, 이를 통해 공유 재산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관리 및 공공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,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【고명욱 의원 대표 발의】

의안 번호	00925117
----------	---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1. 14.

발 의 자 : 고명욱 박종길 임미연
권숙자 도하석 장호섭
남현주 정순옥 손범구
서민우 박왕규 박정환
서보영 이선주 김해철
강한곤 김정희

1. 제안이유

- 공유재산의 운영에 있어 중대한 공유재산 처분 시, 서면심의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심의 절차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, 이를 통해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관리 및 공공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서면심의에 관한 명확한 규정(안 제4조)

3. 일부개정조례안: 따로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3조의2

나. 비용추계 : 비대상

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8항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제12조제3항 각 호 기준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외의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서면심의로 처리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 관계 법령 】

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
제3조의2(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·처분의 기본원칙)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·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.

1.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
2.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
3.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
4.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

[본조신설 2010. 2. 4.]